



가 정 통 신 문

(우)54634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35길 41 (영등동) (http://www.namsung-g.ms.kr)
전화: 063) 841-3825 담당: 학생생활 안전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2.>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 발생률이 최근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1990년대 이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학교폭력의 개념, 유형분류, 심각성의 인식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 ①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②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③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④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①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1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장소무관)
- ②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행위자 무관)·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③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예시적 성격)
- ④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	내 용
신체적 피해	병원치료 여부를 불문하고 폭력에 의해 신체에 고통을 당한 피해로 멍둑, 찰과상, 자상, 골절, 타박상, 성폭력 등이 해당
정신적 피해	욕설, 놀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의해 보통사람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재산적 피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의한 치료비나 금품 갈취, 물건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액

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 피해학생: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가해학생: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성폭력은 남녀 및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 간의 가벼운 장난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작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정에서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이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음란 전화 ▪ 외모에 관한 성적 비유, 평가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요구 또는 회유
신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쾌할 정도로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그림, 사진,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이란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공공장소에는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자리를 피하면 거부로 받아들인다. ▪ 상대가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대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쾌감이 들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하거나 녹음한다.

● 데이트 폭력의 이해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가리킵니다.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고함을 칩 ▪ 모욕적인 말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함 ▪ 때리려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 위협함
성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설적인 글, 그림을 보여주거나 음담패설을 함 ▪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함 ▪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함 ▪ 성적인 행위를 강요함

구분	경계 침해 행위	예방 및 대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 가치관을 확인하고, 성적 표현의 한계를 정해둔다. ▪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고 원하지 않은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우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밀폐된 장소같이 자신이 취약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한다. ▪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성 행동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물리적 경계	-동의 없이 상대방 휴대전화 등 가져와 보기 -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문 열기	
신체적 경계	-원치 않는데 만지기 (어깨 주무르기, 엉덩이 톡톡 치기) -친근감 표현으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언어적 정서적 경계	-소리지르기, 위협하기-계속 전화하기, 상대방이 뭐하는지 계속 물어보기 -결혼했는지, 이성친구 있는지 물어보기 -무작정 찾아오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기	
시각적 경계	-남의 몸 몰래 엿보기 -자기 몸(특정 부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일방적으로 음란물(사진, 그림, 만화 등) 보여주기 -인터넷이나 SNS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간 '나의 성, 나의 인권' 도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117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3월 31일

이리남성여자중학교장 (직인생략)